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08

발의연월일: 2021. 1. 25.

발의자:이수진(비)・양경숙・윤영덕

윤준병 • 이규민 • 정찬민

심상정 · 강은미 · 최연숙

양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상황임. 실제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치고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장애인구의 실업률을 전체인구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 목표에 합의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음.

따라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 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 정 함으로써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 2.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28조제1항 중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를 "환산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3
- 2. 2024년 이후: 1천분의 35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제28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 2.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7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 2.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가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때에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3조(부담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u>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u>	<u>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u>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2.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
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	무) ①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	
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	
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	<u>환산한다)에 대하여</u>
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 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 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 ② (생략)
-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 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 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 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신 설>

④ (생략)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 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 다)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3
- 2. 2024년 이후: 1천분의 35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 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 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 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 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 에 포함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고용률의 특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 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 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 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 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 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
 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
 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

<u>.</u>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u>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u>
2.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2. 2024년 이후: 1천분의 38제79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는 버린다.

-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
-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 ②·③ (생 략)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 2.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② ③ (현행과 같음)